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33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동아·김남근・민병덕

최기상・김우영・조 국

백승아 · 김용민 · 김현정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,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러나 산업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판결에서 실제 실형 선고율이 12.5%에 불과하며,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침해행위를 한 자가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적어 충분한 처벌 수위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이에 따라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 할 수 있다"를 "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배상 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2조의2(산업기술의 유출 및	제22조의2(산업기술의 유출 및		
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	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		
임) ① (생 략)	임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	②		
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			
우에는 <u>다음</u> 각 호의 사항을	손해로 인정되는 금액		
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	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한다.		
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	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		
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	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		
<u><단서 신설></u>	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.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